

# 주주총회소집 공고

주주님의 건승과 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시 : 2023년 3월 24일(금) 오전 10시

2. 장소 :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북11길 103  
(주디엔오토모티브 본사 연구동 5층 대회의실)

### 3. 회의 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 :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
나. 부의사항

제1호의안 : 제52기(2022 1월 1일 ~ 2022년 12월 31일)  
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의 분리 조항 신설)  
(첨부 참조)

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제3-1호 의안 : 사내이사 김상헌 선임의 건

제3-2호 의안 : 사내이사 김원중 선임의 건

제3-3호 의안 : 사외이사 송호근 선임의 건

제4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

제4-1호 의안 : 상근감사 박재환 선임의 건

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

제6호 의안 :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

### 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2023년 3월 9일



株式會社 디엔오토모티브



대표이사 金 仁 煥

디엔오토모티브 정관 개정내용 신·구조문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<b>제45조(이익배당) ① ( 생 략 )</b>  <u>②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</u></p> <p><b>제45조의2(중간배당) ①</b>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</p> <p><u>②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,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, 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	<p><b>제45조(이익배당) ① (좌 동)</b>  <u>②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b>제45조의2(중간배당) ①</b>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</p> <p><u>②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, 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	<p><b>[본문개정]</b>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마다 결정하고,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</p> <p><b>[본문개정]</b> 중간배당기준일을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여 배당기준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수정</p> <p><b>[본문개정]</b> 중간배당 시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을 설정하도록 개정</p>